

『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세진 의원 외 6명

2. 제안이유

-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설치된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의 병원장 연령제한을 개정하여 진료 및 경영능력을 갖춘 인력 확보로 효과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병원조직 운영의 현실화 근거 마련(안 제4조)
 - 병원장의 연령제한 만65세 이하를 삭제

4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노인복지법」, 「의료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설치된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의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시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연령제한 규정 삭제로 수탁자 선정의 폭을 확대하여 연륜과 전문성을 가진 병원장을 선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병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